|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칸서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부터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2년 08월 17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09월 07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칸서스자산운용(주)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목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4**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4
3. 모집(판매)예정금액.....4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4
5. 인수에 관한 사항.....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5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5
4. 집합투자업자.....5
5. 투자운용인력.....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6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6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9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11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14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17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18
14. 이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19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22**
1. 요약재무정보.....2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24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24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26**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26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28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28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28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29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29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30**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30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32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32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36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36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37**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55299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 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을 합니다.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 |
|---|---|
| 모집(판매)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판매)예정금액 한도 내에서 모집(판매) 합니다. |
| 모집(판매)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 등 영업점 |
| 모집(판매)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판매)합니다. |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consus.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판매)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55299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일자 | 내용 |
|---|---|
| 2006.03.04 | 최초설정일 |
| 2008.07.30 | 투자신탁의 명칭변경일 |
| 2009.05.03 |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br>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주식투자신탁1호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2010.05.03. | 판매보수인하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
| 2011.09.30. | 투자설명서 정기개정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금전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회사명 | 칸서스자산운용(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 9층<br>☏ 02-2077-5000 |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운용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 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 다른 운용 자산규모 | |
| 책임운용인력 | 유승우 | 1962 | TI부문 대표 | 11개 | 5,778억 | 대신투신 주식운용팀장(5년7개월)<br>칸서스자산운용 주식·채권운용본부장(8년0개월) |
| 부 책임운용인력 | 차진호 | 1971 | 리서치 팀장 | 2개 | 112억 | 현대증권 리서치팀(8년0개월)<br>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식운용팀(4년1개월)<br>흥국투신운용 주식운용팀(1년1개월)<br>칸서스자산운용 리서치팀(2개월)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3개, 405억원(2012.7월말 기준)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투자신탁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 최초 설정일 | 가입자격 | 수수료 | | 보수 | | | |
|---|---|---|---|---|---|---|---|
| | | 판매 | 환매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일반사무관리회사 |
| 06.03.04 | 선취판매수수료를 부담하는 투자자 | 선취 0.5%이내 | 없음 | 연 1.00% | 연 0.654% | 연 0.03% | 연 0.016%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 주식 | 60% 이상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

| | | | |
|---|---|---|---|
| | | |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합니다. |
| 2 | 채권 | 40% 이하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
| 3 |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4 | 어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인 것 |
| 5 |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을 말합니다.<br>※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합니다. |
| 6 | 집합투자증권등 | 5% 이하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 제21항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30% 이하) |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7 | 증권의 대여 | 증권총액의 50% 이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
| 8 | 환매조건부매도 |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br>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합니다. |
| 9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
| 10 | 단기대출 | - | 법시행령 제34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말합니다. |
| 11 | 금융기관에의 예치 | -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
| 12 | 양도성 예금증서 | -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말합니다.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신탁계약서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9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③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은 신탁계약서 제18조제5호, 제19조제2호본문, 같은 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투자제한의 내용 | 적용유예 |
|---|---|---|
| 이해관계인거래<br>(10%한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이 경우 이해관계인 중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br>가. 단기대출<br>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 동일종목투자<br>(10%한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법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증권을 말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 최초설정일<br>부터<br>1개월간 |
| 동일종목투자<br>(10%초과)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br>가.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 | |

| | | |
|---|---|---|
| |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br>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합니다)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 |
| 동일법인발행 지분증권 (10%한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주식및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법 제81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증권을 말합니다.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 부터 1개월간 |
|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법 제84조제4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 후순위사채권 투자금지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사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2) 투자전략

- 비교지수 : KOSPI*100%
-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펀드 자산을 주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 합니다.
- 운용스타일 : 철저한 기업분석을 바탕으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선정하여 합리적 소수의 Contrarian적 사고에서 운용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주식운용전략

- 벤치마크(KOSPI)와는 다른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철저한 기업분석에 기초한 종목선정을 하므로 Market Timing 운용전략을 지양합니다.
- 따라서 투자자가 자산배분을 사전에 한 다음 당해 펀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투자과정

2) CONSUS Universe의 Valuation Parameter

① 영업실적, 주당실적
② 수익성, 안정성
③ 주가관련지표
④ 시장관련지표
⑤ 회사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서 결정합니다.

**※ 상기 Parameter는 집합투자업자의 내부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권 및 현금성자산 운용전략**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과 신용등급 A2(-) 이상의 어음에 주로 투자합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보다는 주식 매수를 위한 현금성자산으로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파생상품 운용전략**

- 주식, 채권 등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헷지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매매차익 추구 목적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3) 위험관리**

-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및 안정적인 목표수익률 달성을 목적으로 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 조절 및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당해 펀드의 운용성과가 반드시 시장성과와 연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당해 펀드가 추구하는 목표 및 스타일은 단기적인 투자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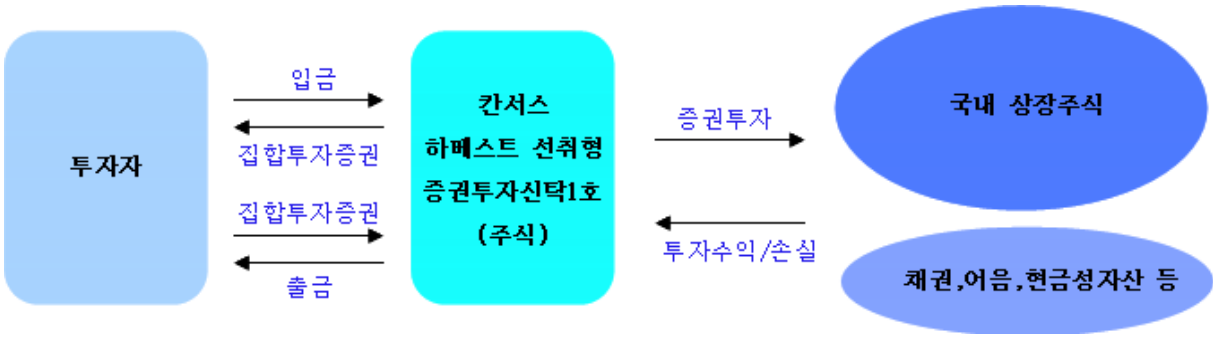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 일반위험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종류 | 세부구분 | 주요내용 |
|---|---|---|
| 개별위험 | 발행회사 위험 | 주식, 채권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 될 수 있습니다.<br>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시장위험 | 주식가격변동 위험 |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
| | 이자율변동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환율변동 위험 | 외화표시 자산을 투자할 경우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용위험 | 부도위험 | 주식, 채권 등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

이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종류 | 세부구분 | 주요내용 |
|---|---|---|
| 운용성향 위험 | 적극적매매 위험 | 이 투자신탁의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br>이러한 전략은 통상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습니다. |
| 투자신탁 위험 | 투자원금손실 위험 | 관련법령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여 이러한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br>**※ 은행 등에서 수익증권이 판매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과 달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다. 기타 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이 투자신탁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종류 | 세부구분 | 주요내용 |
|---|---|---|
| 환매위험 | 유동성위험 (환매연기위험) |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은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환매청구시 위험 | 환매를 청구하시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자는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br>**특히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금액이 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운용실무 위험 | 기준가격오류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 | 규모변동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
| 운용위험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

| | | |
|---|---|---|
| | |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세금관련 위험 | 과세제도 변경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수익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
| | 과세 위험 |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대상자산으로부터의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자산으로부터의 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br>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해지 위험 | 투자신탁 해지위험 |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주식투자에 따른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또한 주식가격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개인, 법인에게 알맞은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시장변동을 감수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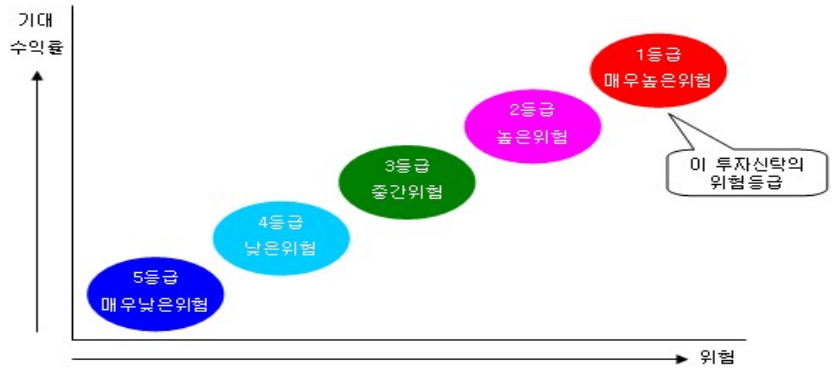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으로서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국내 상장주식 등은 다양한 경제 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신탁은 투자위험등급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칸서스자산운용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위험등급 | 분류기준 | 상세설명 주1) |
|---|---|---|

| | | |
|---|---|---|
| 1등급 | 초고위험 | ◦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 집합투자기구<br>◦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Active형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2등급 | 고위험 | ◦ 고위험자산 주2) 에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br>◦ 파생상품에 10% 초과 투자하는 Passive형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3등급 | 중위험 | ◦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br>◦ BBB0/A3+ 이하 신용평가등급 편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4등급 | 저위험 | ◦ BBB+/A2- 이상 신용평가등급 편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5등급 | 초저위험 | ◦ MMF(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혹은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br>◦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 대상 및 손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 집합투자기구의 모 집합투자기구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별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2) ◦ 고위험자산 : 주식, 후순위사채권, 투기등급(BB+ 이하) 채권, Commodity 파생상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갖는 자산

※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는 주된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투자구조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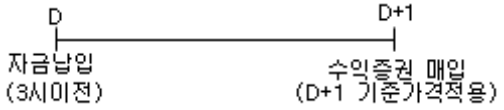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금전을 납입한 경우 : **금전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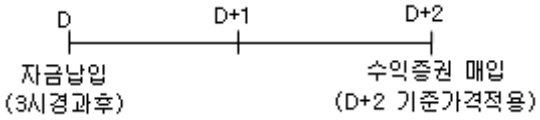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3)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 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나. 환매

(1)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 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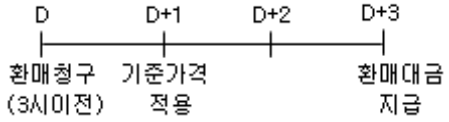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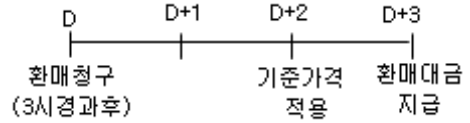


※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법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④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⑤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서 제26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4)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신탁계약서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합니다. 이하 신탁계약서 제27조에서 같습니다)부터 제2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이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토요일은 제외한다)에는 신탁계약서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환매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②신탁계약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제4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판매회사(신탁계약서 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범위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에서 소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6)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시[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등**

①신탁계약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신탁계약서 제28조에서 같습니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

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법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법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④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따른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⑥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 분 | 내 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매일 |

| | |
|---|---|
| 공시방법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
| 공시장소 | 기준가격의 공시는 집합투자업자(http://www.consus.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투자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비상장채권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은 평가기준일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외국의 경우 가격계산시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일의 발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의 발표가격 |
| 국내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상장되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집합투자증권은 상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기타 공정가격이 없는 자산 |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관리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수수료율 | 부과기준 |
|---|---|---|
| 선취판매수수료 | 납입금액의 0.5% 이내 | 매입시 |
| 후취판매수수료 | 없음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 지급시기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연 0.654% | 매1개월 |
| 판매회사 보수 | 연 1.00% | |
| 신탁업자 보수 | 연 0.03% | |
|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 연 0.016% | |

| | | |
|---|---|---|
| 기타비용 | 연 0.009% | 사유발생시 |
| **총 보수·비용** | 연 1.709% | - |
| 증권 거래비용 | 연 0.476% | 사유발생시 |

※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2.08.17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은 2012.08.17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 구분 | 1년 | 3년 | 5년 | 10년 |
|---|---|---|---|---|
| 하베스트선취형 | 224 | 599 | 1,013 | 2,241 |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이익 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분배

#### (1)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2) 이익분배금에 의한 재투자

①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서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3)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신탁계약서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1)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2)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외국납부세액×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수익증권의 과표기준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

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요약재무정보

| 대차대조표 | | | |
|---|---|---|---|
| 항목 | 제 6 기<br>2012.03.13 | 제 5 기<br>2011.03.13 | 제 4 기<br>2010.03.13 |
| Ⅰ.운용자산 | 9,743,260,108 | 12,566,353,089 | 23,084,701,323 |
| 증권 | 9,620,131,850 | 12,076,341,800 | 22,577,818,700 |
| 현금 및 예치금 | 123,128,258 | 190,011,289 | 106,882,303 |
| 기타운용자산 | | 300,000,000 | 400,000,320 |
| Ⅱ. 기타자산 | 129,752,417 | 409,788,205 | 968,768,547 |
| 자산총계 | 9,873,012,525 | 12,976,141,294 | 24,053,469,870 |
| Ⅱ. 기타부채 | 101,391,388 | 276,343,172 | 493,186,333 |
| 부채총계 | 101,391,388 | 276,343,172 | 493,186,333 |
| Ⅰ. 원본 | 10,491,410,714 | 10,212,432,077 | 21,142,617,359 |
| Ⅱ. 수익조정금 | -216,505,316 | -1,452,225,666 | -101,651,823 |
| Ⅲ. 이익잉여금 | -503,284,261 | 3,939,591,711 | 2,519,318,001 |
| 자본총계 | 9,771,621,137 | 12,699,798,122 | 23,560,283,537 |

| 손익계산서 | | | |
|---|---|---|---|
| 항목 | 제 6 기<br>2012.03.13 | 제 5 기<br>2011.03.13 | 제 4 기<br>2010.03.13 |
| Ⅰ. 운용수익 | -315,532,102 | 4,221,262,096 | 14,227,302,533 |
| 이자수익 | 15,387,940 | 12,419,007 | 21,652,235 |
| 배당수익 | 104,878,830 | 162,643,730 | 275,016,435 |
| 매매/평가차익(손) | -436,000,387 | 4,045,526,363 | 13,929,130,162 |
| 기타이익 | 201,515 | 672,996 | 1,503,701 |
| Ⅱ. 운용비용 | 187,752,159 | 281,670,385 | 505,695,022 |
| 관련회사보수 | 186,462,789 | 279,496,479 | 502,023,445 |
| 기타비용 | 1,289,370 | 2,173,906 | 3,671,577 |
| Ⅲ. 당기 순이익 | -503,284,261 | 3,939,591,711 | 13,721,607,511 |
| * 매매회전율 | 308 | 345 | 286 |
| * 매매수수료 | 76,322,370 | 108,732,116 | 165,900,318 |

※ 정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백만좌, 백만원)

| 기간 | 기간초 잔고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
| | | | 설정(발행) | | 환매 | | | |
|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좌수<br>(출자지분수) | 금액 |
| 4기 | 38,265 | 38,265 | 10,487 | 10,664 | 27,610 | 27,889 | 21,143 | 21,041 |
| 5기 | 21,143 | 21,143 | 7,233 | 7,978 | 20,581 | 22,778 | 10,212 | 8,760 |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CONSUS ASSET MANAGEMENT CO.,LTD.

| | | | | | | | | |
|---|---|---|---|---|---|---|---|---|
| 6기 | 10,212 | 10,212 | 6,430 | 5,986 | 8,639 | 8,411 | 10,491 | 10,275 |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1년<br>2011.08.18 ~<br>2012.08.17 | 최근2년<br>2010.08.18 ~<br>2012.08.17 | 최근3년<br>2009.08.18 ~<br>2012.08.17 | 최근5년<br>2007.08.18 ~<br>2012.08.17 | 설정일 이후<br>2006.03.14 ~<br>2012.08.17 |
|---|---|---|---|---|---|
| 투자신탁 | -3.82 | 0.85 | 6.46 | 5.95 | 7.67 |
| 비교지수 | 2.85 | 5.31 | 7.96 | 3.51 | 5.99 |

주1) 비교지수 : KOSPI*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투자신탁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미반영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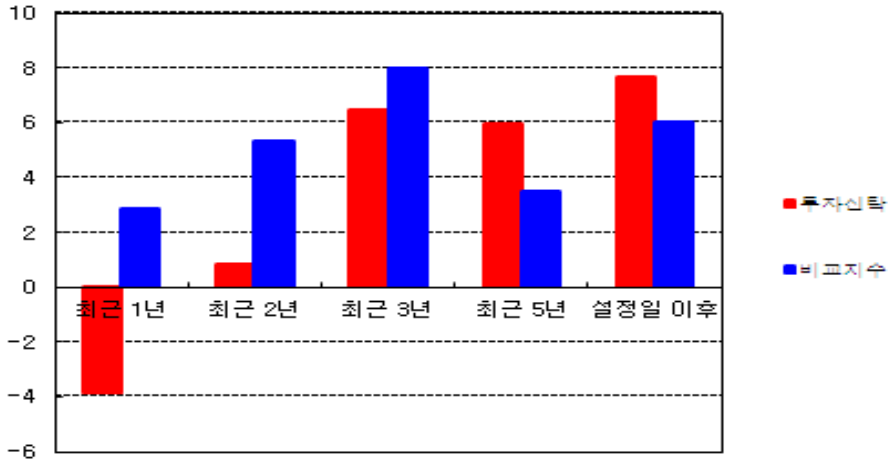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

| 기간 | 최근1년차<br>2011.08.18 ~<br>2012.08.17 | 최근2년차<br>2010.08.18 ~<br>2011.08.17 | 최근3년차<br>2009.08.18 ~<br>2010.08.17 | 최근4년차<br>2008.08.18 ~<br>2009.08.17 | 최근5년차<br>2007.08.18 ~<br>2008.08.17 |
|---|---|---|---|---|---|
| 투자신탁 | -3.82 | 5.75 | 18.62 | 8.71 | 1.80 |
| 비교지수 | 2.85 | 7.84 | 13.44 | -1.60 | -4.02 |

주1) 비교지수 : KOSPI*100%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투자신탁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미반영
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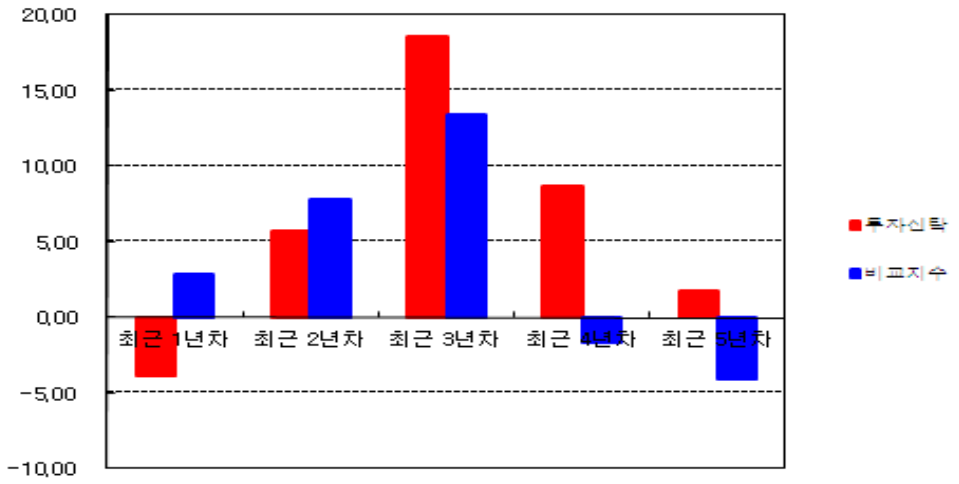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2.08.17.기준, 단위:억원)

| 통화별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 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투자증권 | 장내 | 장외 | | 실물자산 | 기타 | | | |
| 원화 | 95 (92.0) | - | - | - | - | - | - | - | - | 4 (3.50) | 4 (4.50) | 103 (100) |
| 합계 | 95 (92.0) | - | - | - | - | - | - | - | - | 4 (3.50 | 4 (4.50) | 103 (100) |

※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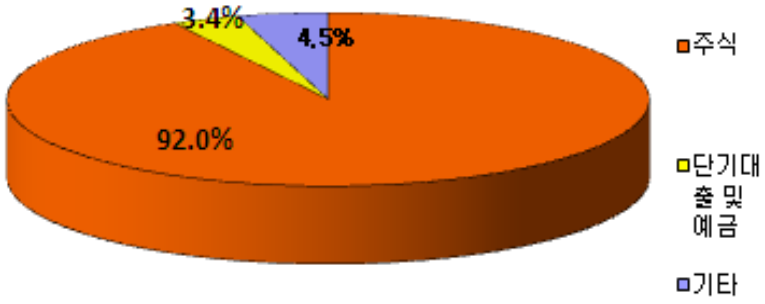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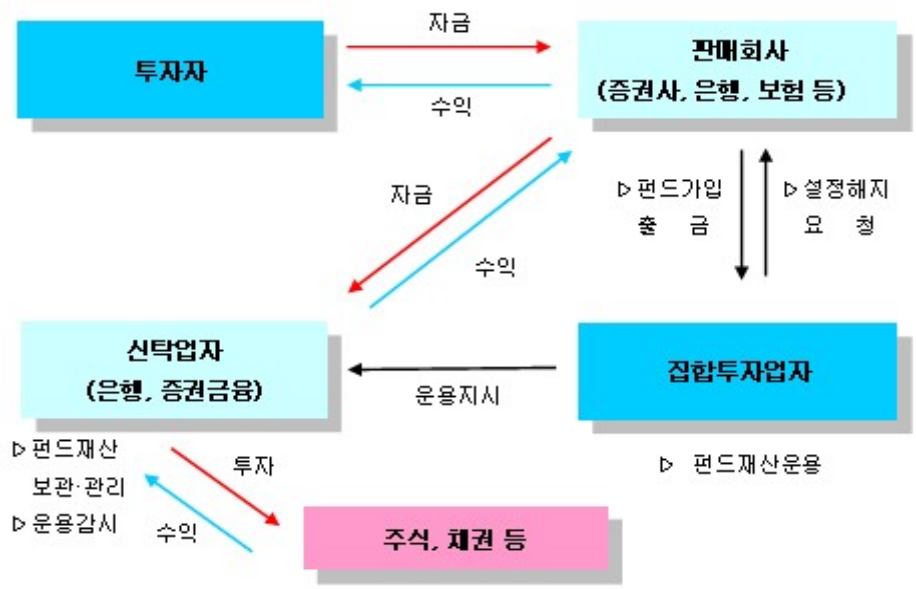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 | |
|---|---|
| 회사명 |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9층<br>(☏ 02-2077-5000, www.consus.co.kr) |
| 회사 연혁 | 2004.05.10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설립<br>2004.09.1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br>2004.10.13 칸서스 하베스트 적립식 주식형펀드 출시<br>2005.12.30 금융감독원 선정, 2005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상 수상<br>2006.01.30 한경Business 선정, 2005년 주식형 Best 운용회사<br>2007.01.31 2007 대한민국 펀드대상 운용사 부문(주식형 펀드운용)<br>2007.08.02 대한민국 최초 펀드 특허 획득 (특허청)<br>2007.09.20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국내 Active주식형부문)<br>2008.06.27 대한민국 펀드 특허 획득 (특허청)<br>2009.02.04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br>2009.12.14 국제투자 성과기준(GIPS) 인증<br>2010.02.04 KDB Consus Value PEF 설립 |
| 자본금 | 187.0억 |
| 주주현황 | 임직원(23.2%), 군인공제회, KDB생명, 대우증권, 하나대투증권 등 |

### 나. 주요 업무

#### (1) 주요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및 평가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①집합투자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 요약 대차대조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항목 | '12.3.31 | '11.3.31 | 항목 | '12.3.31 | '11.3.31 |
| 유동자산 | 13,646 | 11,533 | 영업수익 | 19,682 | 15,674 |
| 고정자산 | 28,377 | 20,525 | 영업비용 | 15,612 | 12,585 |
| 자산총계 | 41,983 | 32,058 | 영업이익 | 4,070 | 3,089 |
| 유동부채 | 3,612 | 2,279 | 영업외수익 | 85 | 452 |
| 고정부채 | 0 | 0 | 영업외비용 | 13 | 1,186 |
| 부채총계 | 3,612 | 2,279 | 경상이익 | 4,142 | 2,355 |
| 자본금 | 18,702 | 18,702 | 특별손익 | - | - |
| 자본/이익잉여금 | 19,602 | 18,372 | 세전순이익 | 4,142 | 2,355 |
| 자본조정 | 3 | 1 | 법인세비용 | 1,114 | 651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4 | -7,296 | 당기순이익 | 3,028 | 1,704 |
| 자본총계 | 38,371 | 29,780 | | | |

## 라. 운용자산 규모

(기준일:2012.07.30/단위:억원)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 | | | | |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투자일임 | 총계 |
|---|---|---|---|---|---|---|---|---|---|---|---|
| 형태 | 증권 | | |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 단기금융 | | | |
| 유형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파생상품 | 부동산 | | | | | | |
| 운용자산 | 4,683 | 1,498 | 1,120 | 518 | 4,662 | 6,902 | - | - | 6,500 | 6,606 | 32,489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주식회사 신한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br>☏ 1544-8000 |
| 회사연혁 등<br>(홈페이지 참조) | www.shinhan.com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신탁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 및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행위 또는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합니다.

(2) 선관주의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및 연대책임

①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 |
|---|---|
| 회사명 | (주)HSBC 펀드서비스 |

| |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증권빌딩 6층<br>☏ 02-3771-9800 |
| 회사연혁 등<br>(홈페이지 참조) | www.kr.hsbc.com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의 산정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 | 나이스채권평가 | KIS채권평가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br>율곡로88<br>☏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4층<br>☏ 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br>여의도동 35-4<br>화재보험협회빌딩4층<br>☏ 02-3215-1400 |
| 회사연혁 등<br>(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kr | www.npricing.co.kr | www.bond.co.kr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2) 연대책임

이 투자신탁의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②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②수익자총회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상법 제36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⑤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⑥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⑦집합투자업자(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항에서 같습니다)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⑧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7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①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①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③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단서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합니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합니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합니다.

**마. 재판관할**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①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투자신탁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①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신탁계약서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서류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②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2) 자산운용보고서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 따라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기준일"이라 합니다)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을 말합니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계약기간의 종료·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서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신탁계약서 제23조제4항 각 호의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탁계약서 제37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신탁계약서 제44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수시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설명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본문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전까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본문의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table>
<tr><th>구분</th><th>중개회사의 선정기준</th></tr>
<tr><td>주식<br>및<br>주식관련파생상품</td><td>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미나</th><th>탐방</th><th>정보 및 리서치</th><th>자료</th><th>주문체결 능력</th><th>수수료</th><th>문제해결 및 기타</th><th>합계</th></tr>
<tr><td>항목가중치</td><td>20%</td><td>10%</td><td>30%</td><td>10%</td><td>15%</td><td>5%</td><td>10%</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각각 1~5점으로 평가<br>* 각 항목별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br>* 등급구분은 상위 합산점수기준으로 A~C 등급은 각각 4개사로 하며, 나머지는 D등급<br>* 등급별 중개회사의 비율은 A(36%이상), B(28%), C(12%), D(24%이하)를 원칙으로 함</td></tr>
<tr><td>채권<br>및<br>채권관련파생상품</td><td>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미나</th><th>보고서</th><th>거래체결 능력</th><th>거래 용이성</th><th>시장판단 대처능력</th><th>기타 서비스</th><th>합계</th></tr>
<tr><td>배점</td><td>20%</td><td>15%</td><td>20%</td><td>15%</td><td>15%</td><td>15%</td><td>100%</td></tr>
</table>
* 각 평가항목은 0~평가항목별 배점으로 평가<br>*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br>* 합산기준 기준으로 상위 10개사를 채권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br>* 합산점수 기준으로 상위 2개사를 채권관련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로 선정</td></tr>
</table>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 참고 : 펀드용어의 정리

| | |
|---|---|
| 집합투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 펀드 |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순자산 |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
| 증권투자신탁 |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특별자산집합기구가 아닌 펀드를 말합니다. |
| 개방형 |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추가형 | 추가로 금전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자본이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
| 배당소득 |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
|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집합투자기구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선취수수료 |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후취수수료 |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
|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수익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
| 설정 | 펀드에 금전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
| 해지 |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
| 수익자총회 | 신탁계약서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로서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신탁계약서에 따릅니다.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수익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비교지수 |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br>당해 펀드의 비교지수 : KOSPI*100% |
| 신주인수권부 사채 |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절취선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 명칭 : 칸서스 하베스트 선취형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고객 확인 사항 | 고객 기재사항 |
|---|---|
|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 (받았음) |
|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적합함) |
|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 (제공받고 들었음) |
|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 (들었음) |
|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 (들었고 권유 받았음) |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칸서스자산운용주식회사
CONSUS ASSET MANAGEMENT CO.,LTD.